

2.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1.4.12(월) ~4.21(수) (10:00 ~ 18:00) ※ 인터넷신청은 토·일요일포함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1. 4. 30(금)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21.5.3(월) ~5.10(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A57-1블록 담당자 앞 (등기우편은 '21.5.10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21.7.20(화) 17:00 이후 (확인)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ARS(1661-7700)	'21.8.2(월) 10:00 ~8.4(수) 17:00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1.05.10(월)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16A	16.70	9.4442	1.7907	7.4385	35.373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22.06
21AH	21.14	11.9551	2.2668	9.4162	44.7781		
21AL	21.36	12.0795	2.2904	9.5142	45.2441		
26AH	26.06	14.7375	2.7944	11.6076	55.1995		
26AL	26.25	14.8449	2.8149	11.6923	55.6021		
26B	26.25	14.8449	2.8149	11.6923	55.6021		
36AH	36.50	20.6415	3.9140	16.2579	77.3134		
36AL	36.72	20.7659	3.9375	16.3558	77.7792		
36B	36.72	20.7659	3.9375	16.3558	77.7792		
44A	44.70	25.2788	4.7933	19.9103	94.6824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16A	대학생	20	40	21,080	2,108	18,972	78,170	(+) 1,000	22,080	73,170	6
	청년(소득有)	20		22,320	2,232	20,088	82,770	(-) 18,000	3,080	115,670	
								(+) 2,000	24,320	72,770	
	청년(소득無)	20		21,080	2,108	18,972	78,170	(-) 19,000	3,320	122,350	
								(+) 1,000	22,080	73,170	
	21AH /21AL	대학생		43	87	26,520	2,652	23,868	98,340	(+) 5,000	
청년(소득有)		44	28,080	2,808		25,272	104,130	(-) 23,000	3,520	146,250	
								(+) 6,000	34,080	74,130	
청년(소득無)		44	26,520	2,652		23,868	98,340	(-) 24,000	4,080	154,130	
								(+) 5,000	31,520	73,340	
26AH /26AL		대학생	49	98		31,620	3,162	28,458	117,250	(-) 23,000	3,520
	청년(소득有)	49	33,480		3,348	30,132	124,150	(+) 9,000	40,620	72,250	
								(-) 27,000	4,620	173,500	
	청년(소득無)	49	31,620		3,162	28,458	117,250	(+) 10,000	43,480	74,150	
								(-) 29,000	4,480	184,560	
	주거급여수급자	48	48		27,900	2,790	25,110	103,460	(+) 9,000	40,620	72,250
(-) 27,000				4,620					173,5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4	24	35,340	3,534	31,806	131,050	(+) 6,000	33,900	73,460	20
								(-) 24,000	3,900	153,460	
36AH /36AL	청년(소득有)	10	10	46,440	4,644	41,796	172,210	(+) 12,000	47,340	71,050	6
	청년(소득無)			43,860	4,386	39,474	162,640	(-) 30,000	5,340	193,550	
								(+) 18,000	61,860	72,640	
	청년(소득無)			43,860	4,386	39,474	162,640	162,640	(-) 38,000	5,860	
		(+) 20,000	66,440						72,2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4	14	51,600	5,160	46,440	191,350	(+) 22,000	73,600	81,350	6~10
(-) 44,000								7,600	283,01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2	12	49,400	4,940	44,460	183,190	(+) 21,000	70,400	78,190	20
								(-) 42,000	7,400	270,69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존거주자	93	91	63,200	6,320	56,880	234,360	(+) 28,000	91,200	94,360	6~10
								(-) 54,000	9,200	346,860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 21AL, 21AH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44A형 3세대는 화성동탄2지구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되는 경우 타 계층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AH, AL 타입은 구조는 같으나 일부 벽체 치수 차이가 있으며, 공급형을 통합하여 청약신청을 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㉞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㉞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㉞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①-㉞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	--

• 배점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화성시 및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화성시 외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에 거주(단, 부모 모두 화성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㉒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04.01~2002.03.31)
- ①-㉒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589,95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됨**
- ※ ①-㉒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㉒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㉒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는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청약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발급하기 → [일반공급]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16A, 21AH-AL, 26AH-AL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㉑와 ②~④) 를 모두 갖춘 사람

①-㉓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㉑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맞벌이 461,25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 에 3년 이상 거주	화성시 에 3년 미만 거주
② 청약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회면 하단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4. 고려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 일 것

- ※ '고려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화성시에 5년 이상 거주	화성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화성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화성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6. 기존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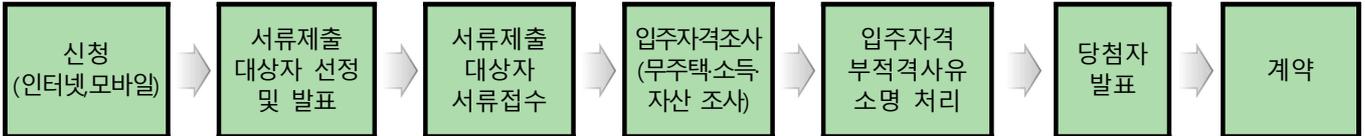
■ 기존거주자(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최대거주기간 : 20년

※ 기존거주자(철거민)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내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해당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인터넷청약신청→행복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해당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1.04.12(월) 10:00 ~ 접수마감일 2021.04.21(수) 18: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인 04.21(수)일은 18시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서류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1.4.30(금) 17:00 ~)**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apply.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1.5.3(월) ~ 5.10(월)**
 - 제출 서류: 공고문(6.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 게시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05.10(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우편 발송(※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ex. 홍길동/000000/16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3.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218호 임대공급운영1부
화성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공사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수량,가액 증명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청 년 계 층	사회초년생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직장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p>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p>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p>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p>
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p>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p>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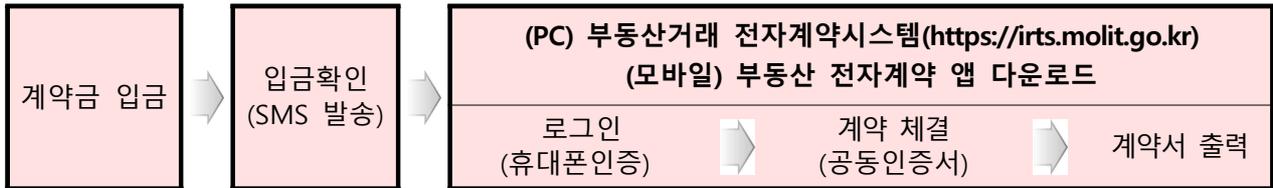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기간 : 2021. 8. 2(월) ~ 2021. 8. 4(수)]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p>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 이하인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p> <p>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p> <p>*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p> <p>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p> <p>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p> <p>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p>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총 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p>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p> <p>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p>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입주자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2,49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둘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p>신청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p>지구 및 단지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p>■ 지구 내·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탄JC지점내에 폐1위치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공공공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서측 약 4.9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예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35m도로가 계획되어있으며 유치원용지, 초등학교용지, 고등학교용지 단독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공고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시설은 단지 외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작은도서관 등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연결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간에 레벨차이(105동, 106동 전면부, 102동 전면부 레벨차 약4.5M)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단차극복구조물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북서측과 남동측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2개의 레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계단실, ELEV홀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각동 부계단실 바닥마감은 미장마감이며, 창호는 없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환기를 위한 외부 DA(환기탑) 및 부대시설 에어컨 실외기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부에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 출입구 높이는 3m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구 및
단지특성

지구 및
단지특성

- 이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상 및 지하 주차 538대(장애인 및 전기충전주차, 경차, 확장형 포함)이며, 538대중 22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101동 인접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3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상가용도와 입주민 용도 별도 구분·구획이 없고,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지자체 및 입주자 의견에 따라 외부에 위탁운영 시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102동~103동 사이 위치에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은 103동 7,8호라인 지하 1층에 위치합니다.
 - 주민카페는 102동 8호라인 지상 1층에 위치합니다.
 - 청년카페는 104동 4, 5, 6호 라인 지하2층에 위치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104동 4, 5, 6, 7호 라인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
 - 공용세탁실은 104동 7호라인 지하2층 및 105동 1층에 위치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105동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
 - 단지 내 경로당은 104동 ~ 105동 사이에 위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됩니다.
 - 재활용창고는 102동, 104동, 105동 주변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 팬이 설치되는 개별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최상층의 경우 흡출기가 근접해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큰키나무) 식재 불가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함)가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 내에서 보이거나 냄새, 소음, 분진 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형태·위치·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품 보관 및 쓰레기분리수거)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가 및 아파트 인근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 및 변압기가 설치되면, 인접동 및 세대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102동, 103동, 106동 옥상 및 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 2층 헬룸1)에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 안테나를 지하층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우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과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비디오폰설비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1층 출입구(동별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속충전기 1대 : 106동 인근
 - 완속충전기 2대 : 102동 인근
 - 과금형 이동식 콘센트 8대 : 입주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104동 및 105동의 경우는 지붕층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저층세대는 보안등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전기 설계 부하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형 3,480VA, 21㎡형 3,630VA, 26㎡형 3,780VA, 36㎡형 4,080VA, 44㎡형 4,320VA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쓰레기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복도창호는 설치되나 방충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6㎡형은 세탁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단지내(104동, 105동) 공용(코인)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16㎡, 21㎡형은 빌트인 책상이 기본 설치됨에 따라, 책상이 설치된 위치에 스텐드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벽걸이형 설치 가능)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의 단차는 물빠짐을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PVC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전동 복도 양 끝에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높이조절·접힘·걸침기능이 가능한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칠로 시공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지구 및
단지특성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주거약자세대 104동(1,2호 세대 1층~13층),(5~10호 세대 1층~8층) 세대 거실1개소에 설치됩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은 현관 또는 주방에 매입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16㎡형,21㎡형, 26㎡형,36㎡형,44㎡형)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조명기구는 천장등(16㎡형,21㎡형,26㎡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조명기구는 벽부등(36㎡형,44㎡형)으로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등(16㎡형,21㎡형,26㎡형,36㎡형,44㎡형)으로 설치됩니다.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부대시설에 한함)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발코니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PL외창이 설치되어 있어 사다리차 사용 시 하중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우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전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등의 임의 위치 이동 등)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 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E/V홀, 현관, 발코니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 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설치 위치:1개소(101동,106동 인근)]

<p>지구 및 단지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LED램프가 적용됩니다. • 거실에어컨 콘센트는 벽걸이형(16㎡형,21㎡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거실에어컨 콘센트는 스탠드형(26㎡형,36㎡형,44㎡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세탁실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세대현관문 도어락은 열쇠타입입니다. • 세대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환기용 유니트가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한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과 발코니 바닥배수 설치위치와의 이격거리가 있어, 에어컨 가동시 발생하는 응축수가 발코니에 방류되어 배수트랩으로 이동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모든 세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며, 부수고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예정 초등학교(초23)는 21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정으로 개교일정 미정입니다. • 초등학생은 초23에 배정될 예정이나 금년 하반기 교육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하여 일정을 정할 예정이므로,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임시로 타 초등학교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유사사례로 인근 단지 A63BL의 경우가 있으며, 현재 청림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도 추후 학생배치계획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목동중, 청림중, 방교중, 서연중]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설립되는 중학교(중8, 중9 등)를 포함한 학생 배정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창의고, 정현고, 서연고, 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등]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기타사항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인증받지 않음(2018.12.31일 전 사업승인 신청 현장으로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업체
A57-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토목,기계, 조경	-	-
		요진건설사업(주), 한양산업개발(주), 부광건설(주), 대방(주)		
		전기,통신		
		플랜트서비스(주), 중앙이엔에프(주)		

1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공정진행 상 신청 가능한 항목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화성동탄2 A57-1블록 행복주택 홍보 모바일 홈페이지 (www.lh-dt2.co.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